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. 3. 14 선고 2023가단139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2. 29.

판 결 선 고 2024. 3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전 775㎡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컨테이너 77㎡, 같은 도면 표시 6, 7, 8, 9,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비닐하우스 115㎡, 같은 도면 표시 10, 11, 12, 13,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ㄷ)부분 비닐하우스 118㎡, 같은 도면 표시 14, 1, 2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ㄹ)부분 시멘트바닥포장 724㎡를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23. 8. 24. 충남 부여군 C 전 775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‘2023. 8.

21.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’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컨테이너 77㎡, 같은 도면 표시 6, 7, 8, 9,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비닐하우스 115㎡, 같은 도면 표시 10, 11, 12, 13,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ㄷ)부분 비닐하우스 118㎡를 설치하고, 같은 도면 표시 14, 1, 2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ㄹ)부분 724㎡에 시멘트로 바닥포장을 한 후(위 각 지장물을 ‘이 사건 각 지장물’이라 한다),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 및 결론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(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지장물 설치비용 및 이사비용을 지급받아야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).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숙미

별지